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경찰공무원이 교통사고를 낸 차량 운전자 등에 대해
교통사고 잔해물 수거·처리 지시 근거를 명시〉
■ 윤상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841호)

2025. 9.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나 아 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윤상현의원 등 12인
2. 제안연월일 : 2025. 7. 30.
3. 회부연월일 : 2025. 7. 3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차 또는 노면전차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와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교통사고 발생 시 사상자 구호 등 사고처리 후 차량 파손 등에 따른 파편 등 잔해물 처리에 대한 명확한 주체 및 조치 규정이 없어 일선 현장에서 사고 잔해물 처리를 두고 혼선이 발생하고 있으며, 처리되지 못한 사고 잔해물로 인한 2차 교통사고 사례도 있음.

이에 경찰공무원은 교통사고를 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등에 대하여 그 현장에서 부상자의 구호와 함께 교통사고 잔해물 수거·처리 등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교통사고 처리 과정에서 혼선을 줄이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4항).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경찰공무원이 경찰공무원이 교통사고를 낸 차량 운전자등에 대해 지시할 수 있는 내용에 교통사고 잔해물 수거·처리가 포함됨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② 제1항의 경우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 ③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하여야 한다. 다만, 차 또는 노면 전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고가 일어난 곳 2.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3.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4. 그 밖의 조치사항 등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경찰공무원은 부상자의 구호와 그 밖의 교통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신고한 운전자등에게 현장에서 대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경찰공무원은 교통사고를 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등에 대하여 그 현장에서 부상자의 구호와 <u>교통안전</u>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명할 수 있다. ⑤·⑥ (생략)	④ ----- ----- ----- -----<u>교통사고 잔해물 수거·처리</u> <u>등 교통안전</u>을-----. ⑤·⑥ (현행과 같음)

현행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제1호는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 또는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함)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법원은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등이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야 하는 필요한 조치에 교통사고 후 교통질서의 회복 등을 위한 조치가 포함되고, 교통사고 운전자등은 통행에 장애와 위험을 가져오는 교통사고 잔해물을 치워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해석하고 있음. 교통사고 운전자등이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제1호 등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¹⁾에 따라 처벌됨.²⁾

개정안을 통해 경찰공무원이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등에 대해 교통사고 잔해물 수거를 지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잔해물 수거·처리 등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신속하게 교통사고 잔해물을 처리하고 교통질서를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의 취지는 교통사고 처리 과정에서 혼선을 줄이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① 범퍼가 부서지는 정도를 넘어서 자동차가 반파되는 등 피해가 심각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개정안에 따라 경찰공무원이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등에게 교통사고 잔해물 수거를 지시하더라도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등이

1)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 9. 30. 선고 2022고단1259 판결[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에서 교통사고 발생 이후 도로에 떨어진 운전차량의 앞 범퍼를 방치한 경우에 대해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제1항을 적용하여 벌금 100만원에 처함.

해당 지시를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점, ② 현행 「도로교통법」 규정으로도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의 잔해물 수거·처리 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점 및 ③ 차량이 운행 중인 도로에서 조치하는 경우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등의 안전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경찰청에 따르면, 현재에는 교통사고 잔해물 처리와 관련해서 경찰이 1차적으로 정리한 이후 「도로법」 제2조제5호³⁾ 등에 따른 도로관리청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처리를 요청하고 있음.⁴⁾

이를 고려하면 개정안의 취지에 따라 교통사고 처리과정에서 혼선을 줄이고 교통사고 잔해물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교통사고의 정도 및 교통사고 잔해물의 크기와 무게 등에 따라 개정안에 따라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지시를 하는 것 외에도 도로 관리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도로관리청과 보다 신속하게 협력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임.

참고로, 경찰청은 현행법상 도로에서의 위험요소가 발생할 경우, 도로관리청에서 처리하고, 이에 대한 비용발생 시에 사고 원인자에게 손해배상 청구절차가 마련되어 있고, 운전자의 잔해물 수거·처리 업무를

3) 「도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도로관리청”이란 도로에 관한 계획, 건설, 관리의 주체가 되는 기관으로서 도로의 구분에 따라 제23조에서 규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국토교통부장관

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행정청”이라 한다)

4) (관련 언론보도) 일간경기 2025년 4월 21일 기사, “야간 교통사고 잔해물 처리 지자체·경찰 골머리”

명문화 할 경우 사고 피해로 인해 즉시 처리하기 어려운 운전자가 처리하여야 하므로 신속한 처리의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 6788-5345